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51호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5)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주)엔엘에스(김승한)		
	주 소	우1277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12		
	전화번호	02-2687-2200	팩스번호	02-6280-2229
신청인(2)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선홍규)		
	주 소	우171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82		
	전화번호	02-3393-3466	팩스번호	02-3393-3469
신청인(3)	법인명(성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최익훈)		
	주 소	우0437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전화번호	031-766-8551	팩스번호	031-766-8598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73호
- 명 칭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 기술분야 : 건축 > 특수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1차 반사경, 2차 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sqrt{2}$) 1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 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셀형 2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 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이다.

- 신기술의 범위

태양추적방식의 타원형($1:\sqrt{2}$) 1차반사경과 픽셀형 2차반사경이 일체화 된 채광장치 및 채광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7.14. ~ 2028.07.1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